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4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제명 및 조문의 단체명을 단체의 공식 등록 명칭인 ‘하남시 해병대전우회’로 통일하여 명칭의 정확성을 높이고 단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현행 사업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사업 중 명확하지 않은 사업 범위는 구체화하고 워크숍 등 교육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 다.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활동 등을 추가하여 해병대전우회의 전문성을 살린 대민 봉사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 부호, 용어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체명을 ‘하남시 해병대전우회’로 통일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5조제2항)
- 나. 지원 대상사업의 현행화 및 구체화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 (제2호)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추가
 - (제5호)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지원 근거 신설
- 다. 포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해병전우회”를 “해병대전우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를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시장’”를 “이하 “시장””으로, “해병전우회”를 “해병대전우회”로, “대하여”를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죄예방(자율방범)”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도에 관한”을 “지키기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활동 등 환경보존”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을 “지원 활동”으로 한다.

2.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제3조제2항제1호 중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병전우회원”을 “해병대전우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병전우회”를 “해병대전우회”로, “반영 할”을 “반영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u>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u>해병전우회</u>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해병대전우회</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하남시 <u>해병전우회</u>”(이하 “<u>해병전우회</u>”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p> <p>2. “<u>재난복구</u>”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p>	<p>제2조(정의) ----- -----.</p> <p>1. ----- <u>해병대전우회</u>”(이하 “<u>해병대전우회</u>”----- ----- ----- ----- -----.</p> <p>2. “<u>재난복구</u>”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 -- -----</p>

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
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3.·4. (생 략)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하남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
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
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
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
명구조

<신 설>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
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
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3.·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
---이하 “시장”-----

-- 해병대전우회-----
-----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

1. ----- 범죄
예방 및 자율방범 -----

2.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3. ----- 지키
기 홍보 ---

<삭 제>

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4. -----
-- 활동

6. -----
-----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② -----

-----.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

2. 해병대전우회원-----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병대전우회-----

반영할 -----.

제6조의2(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